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당 지급을 위한 입금계좌 확인정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 규제 일몰 해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행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을”을 “포함한다)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장제를 하는 사람을”을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주민등록표등본(”를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로, “의 내용을”을 “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에”를 “이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참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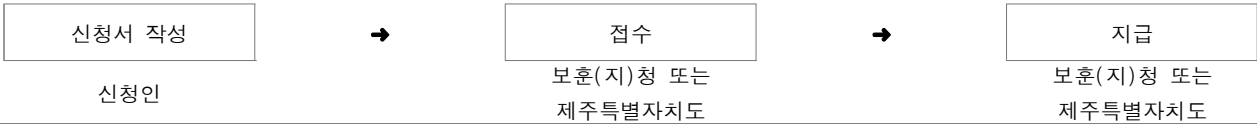
본인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참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변경구분	☐ 예금계좌 변경		금융기관명
	☐ 계좌입금으로 변경		
	☐ 압류금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로 변경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으로 변경		
변경지급 희망시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 여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부양의무자: 신청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이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1.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본인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조사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

신청인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안장지 (또는 예정지)		
신청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장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례를 행한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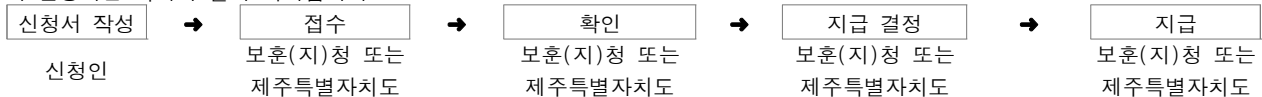
본인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원	일시납부 금액 원	분할납부 신청 금액 원	분할납부 횟수 회	월 납입일 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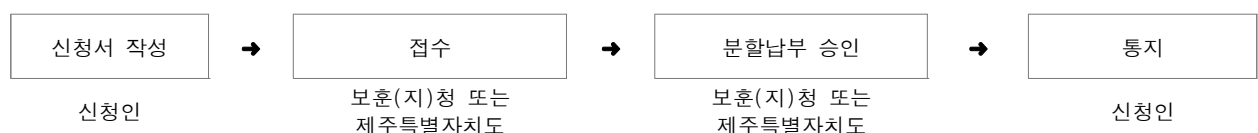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 ----- ----- ----- ----- ----- ----- <u>포함한</u> <u>다)</u> 를 ----- ----- ----- ----- ----- <u>제출해야</u> <u>한다.</u>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 방	② ----- ----- ----- ----- ----- ----- ----- <u>포함한다)</u> 를 --- ----- ----- -----

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장제를 치른 사람임을 -----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
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
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
인이 될 사람에 한정한다)의 내
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가보
훈처장은 제6조에 따른 신상변
동의 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5.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
-----과 신
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
-----.--- 이에 -----
-----.

제10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환수금 분
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
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삭 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